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 (이행기간 14일)						
당사자	성명(명칭)	(주)오더 (대표이사 김희익)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6층(삼성동, 세화빌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오더는 수시점검('21.12.17) 결과, 등록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 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이행기간 14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오세영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전자우편주소	roach530@korea.kr			팩스번호	-
	제출기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